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19-05-사법위-01

수 신 : 법무부 인권구조과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지미)

제 목 : [공문]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전송일자 : 2019. 5. 8.(수)

전송매수 : 총 1매

1.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는 첨부된 바와 같이 법무부공고 제 2019-80호에 따라 입법예고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감사합니다.

첨부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지미 (직인 생략)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는 법무부가 제출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의견 제출의 대상이 되는 법률안

- 법무부가 2019. 3. 29. 법무부공고 제2019-80호 공고에 따라 입법예고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합니다).

2. 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법률구조’의 정의 규정 일부 수정(안 제2조)

- 1) 현행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의 정의를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으로 정하고 있음
- 2) ‘법률구조’ 정의에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추가함

나.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 관련 사항 규정(안 제19조의2)

- 1) 공단은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발·위촉하고, 매년 피의자국선변호인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2)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피의자의 체포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를 해당 수사기관과 체포피의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3)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업무수행 내용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의견 개진 등의 사항으로 정하도록 함
- 4)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자격, 명부 통보 방식, 선정, 고지 절차 및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 신설 및 업무범위 등 규정(안 제19조의3)

- 1) 피의자국선변호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
- 2) 피의자국선변호인 선발·평가 등 관리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법률안에 대한 민변 사법위원회의 의견

가. 들어가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형사절차에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무기대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공정한 형사사법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제도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수사-기소-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형사피고인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의 피의자에 대한 법률구조는 사건별로 법원이 선임한 국선변호사, 각 고등법원 관할 별로 법원이 위촉한 국선전담변호사, 논스톱 국선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기소 전 형사피의자에 대한 법률구조는 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회의 당직변호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주도하는 국선변호제도에 대하여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독립적 변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회의 당직변호사에 의한 법률구조는 그 범위와 대상이 협소하여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기존 제도의 한계와 비판을 답습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 제도운영의 주체 측면

법률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운영 주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며,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합니다)를 설치하여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선발 및 평가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률안 제19조의3).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법인(「법률구조법」 제9조)으로, 그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법률구조법」 제13조 제2항)하고, 예산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사항(「법률구조법」 제29조 제2항)이며, 업무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법률구조법」 제35조).

한편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의 외청으로,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감독(「검찰청법」 제8조)하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개별 검사에 대하여 지휘·감독권(「검찰청법」 제7조 제1항) 및 직무이전권(「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검찰청의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되는바, 법률안에 의하면 개별 사건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향후 기소와 공소유지를 수행하여야 할 검찰과, 해당 사건의 피의자를 조력하여야 하는 변호인이 직·간접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게 되므로, 결국 상호간 이해충돌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소정의 피해자 국선변호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이하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라 함)의 경우,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법률안과 같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관하게 될 경우, 형사피해자를 조력하는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와 가해자인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내에서 공존하는 형태를 피할 수 없게 되는바, 이 또한 이해상반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국선 변호를 담당하는 제도의 운영 주체는 법무부 또는 법무부 산하기관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독립된 제3의 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제도운영의 물적 범위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법률구조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과거보다 확대되는 법률구조의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른 ‘체포된 피의자’에 머물게 됩니다(법률안 제19조의2 제1항).

수사과정 전반에 있어 피의자의 인권 침해 소지가 가장 높은 시기는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증거가 드러나며, 피의자의 진술도 구체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적 수사 욕구가 가장 높은 시기라는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따라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강제수사로 나아가기 이전의 임의적 진술 단계와 같은 초동수사의 국면부터 운영되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법률안은 수사기관이 대인적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체포에 나아간 이후에야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는 상황을 상정한 채, 당해 변호인의 업무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및 피의자 신문 참여’ 등으로 국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제도 운영의 범위는 수사

초기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라. 제도운영의 시적 범위 관련

본 법률안에 따른 피의자국선변호인은, 그 명칭에서부터 드러나듯 당해 피의자가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인 변호 활동을 담보하지 못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그러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관점에서, 수사과정에서부터 조력을 받아 온 변호인이 기소된 이후 변호인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새로운 변호인에게 새로이 모든 정보를 다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새로이 선임된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당해 사건의 수사단계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새로이 사건을 파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쟁점에 대한 이해도 충분치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구조는 피의자 단계부터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전환된 이후까지 동일한 변호인이 계속하여 조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성안되어야 합니다.

마. 소결

법률안은 피의자 단계의 법률구조를 확장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의 범위를 일부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운영의 주체, 제도운영의 물적·시적 범위와 관련하여, 과거 논의되어 왔던 제도적 한계와 비판을 답습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법률안의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결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5.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법무부장관 귀중